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1 (천안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층, 6개동, 총 316세대

■ 공급개요

(단위 : m²)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84.9511	27.1114	112.0625	52.0595	164.1220	2024년 3월 예정
	84B	84.9574	25.9279	110.8853	52.0633	162.9486	
	84C	84.9913	26.5471	111.5384	52.0840	163.6224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천안시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전용 85m²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84A	84B	84C	계
장애 인	충청남도	확정	2	1	1	4
		예비	6	3	3	12
	대전광역시	확정	2	1	1	4
		예비	6	3	3	12
	세종특별자치시	확정	2	1	1	4
		예비	6	3	3	12
국가유공자		확정	3	1	1	5
		예비	9	3	3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정	3	1	1	5
		예비	9	3	3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확정	3	1	1	5
		예비	9	3	3	15
중소기업 근로자		확정	3	1	1	5
		예비	9	3	3	15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2.09.16.(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예정)	2022.09.23.(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건본주택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2.09.26.(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2.10.06(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발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장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방문주소는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통장 청약가능)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

구 분	천안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만원	25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 만원	4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 만원	700 만원
모든 면적	500 만원	1,000 만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유주택이어도 청약가능.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경우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시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IV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개정·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 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단,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개정·시행일(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단, 개정·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한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 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7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V

참고자료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천안 쌍용동 이마트 인근)
- 견본주택 관람은 관람시간 내 자율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향후 예약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buseong.firstvill.co.kr>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88-8034으로 문의바랍니다.